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90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신장식 · 서왕진 · 김재원
황운하 · 차규근 · 강경숙
박은정 · 김준형 · 정춘생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수산업·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을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제402조, 제403조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임원의 책임 등) ① ~ ④ (생략)</p> <p>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u><후단 신설></u></p>	<p>제33조(임원의 책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제402조, 제403조 및-----. <u>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u></p>
<p>제35조(이사회 소집) ① (생략)</p> <p>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p>	<p>제35조(이사회 소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 .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
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
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 회의
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 회의
에 부쳐야 한다.